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3
----------	-------

제출년월일 : 2004. 3. 31.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현행 조례상의 설치 기준 등 일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통·리·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 도농복합시인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리하여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리·반설치 조례의 규정목적에 폐치·분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을 추가(안 제1조).
- 지금까지는 통·리의 설치기준을 4개반 내지 30개반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농촌지역 신마을 형성시에는 최소 2개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지금까지는 반의 설치기준을 20가구 내지 80가구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조정함. (안 제3조제2항).
-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시 통·리·반을 폐치·분합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2조중 “통을 두며”를 “동에는 통을 두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기준) ①통·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동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리·반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분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4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통을 두며 통·리에는 반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동에는 통을 두며.....
제3조(확정기준) 통은 4내지 30개반으로, 반은 20내지 80가구(읍면지역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읍면지역은 8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①통·리는 건물구조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 관계를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리·반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분합할 수 있다.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현행 조례상의 설치기준 등 일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통·리·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 도농복합시인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리하여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통·리·반 설치 조례의 규정목적에 폐치·분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을 추가. (안 제1조)
- 지금까지는 통·리의 설치기준을 4개반 내지 30개반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농촌지역

신마을 형성시에는 최소 2개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기존 형성된 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지금까지는 반의 설치기준을 20가구 내지 80가구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조정함. (안 제3조제2항)
-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시 통·리·반을 폐치·분합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와 패키지마을 조성 등으로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등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인해 현행 조례상의 통·리·반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일선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통·리·반 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리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통·리의 설치기준을 4개반 내지 30개반으로 하던 것을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마을 형성 시에는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동조 제2항에서는 반의 설치기준을 현행 20가구 내지 80가구로 구성하던 것을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같은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15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준 1개 라인 30가구를 1개반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거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통리반의 설치기준이 맞지 않을 시 통·리·반을 폐치·분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과 제5항 규정 등에 의거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그동안 통·리·반 설치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반사회 운영 등 일선행정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의 반 재조정 요구가 다수 있었던 상황에서 통·리·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임.
- 그러나 주민편의 위주만으로 무리하게 통·리·반 등이 설치될 경우 통·반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적으로 1개 통·리 증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통·리장들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등 3,280천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1개반 증가 시에는 50천원의 예산이 소요됨.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⑤통·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통·리를 2개 이상의 통·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통·리를 하나의 통·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통·리(“행정통·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통·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